

대전지방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2가단10367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, D

피 고 E

소송대리인 F

변 론 종 결 2023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3. 1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888,830원 및 그중 30,115,823원에 대하여 2022. 6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0. 11. 17. 소외 주식회사 G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와 장기렌트카 약정을 체결하였고, 이에 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였다.

나. 소외 회사는 2022. 6. 2. 기준으로 1) 위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금 30,115,823원을 포함하여 총 32,888,8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.

다. 원고가 위 약정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24%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4,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2,888,830원 및 그중 30,115,82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. 6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장기렌트카 약정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5, 6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비추어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종섭

1) 원고는 2022. 6. 2. ‘경매 후 차량 매각대금’으로 42,445,455원을 입금받았다.